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박승진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칠성, 성흠제,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정준호, 홍국표 의원(20  
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점검 주기와 보고 주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점검 주기를 명시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점검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 등이 매년 교통안전 체험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개정(안 제3 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 등의 책무)</p> <p>① (생 략)</p> <p>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정기적으로</u>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매</u> <u>년</u> ----- -----.</p>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2항에서 시장 등이 매년 교통안전 체험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